

## ● 이수회 회칙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(명 칭)

본 회는 중도이수회라 칭한다.

#### 제 2 조 (목 적)

본 회는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서 회원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교류 활동을 통해 동문회와 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3 조 (사 업)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목표를 설정한다.

1. 업계동향 및 수주에 관한 정보 및 자료교환
2.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섭외
3. 회원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
4.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사업
5. 기타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# 제 2 장 조 직

#### 제 4 조 (자 격)

본 회의 입회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중앙대학교 토목(건설환경)공학 학부 및 대학원 교수
2. 중앙대학교 토목(건설환경)공학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
3.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

#### 제 5 조 (회 원)

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## 1. 정회원 (회원이라 칭함)

제3조 본회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년 4회 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한 자로한다.

##### 2. 준회원

해외파견 및 지방발령 등의 사유로 정회원 활동이 당분간 어려운 회원으로 한다.

#### 제 6 조 (준수사항)

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.
2. 회원끼리의 협조관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3. 학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임 원

#### 제 7 조 (구 성)

본 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총무 등 각 1인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8 조 (임 기)

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#### 제 9 조 (자 격)

1. 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
2.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#### 제 10 조 (선 출)

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회 장 : 전년도 중토이수회 부회장은 정회원 3인이상 추천을 받아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한다.
2. 부 회 장 : 전년도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출한다.
3. 총 무 :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.

#### 제 11 조 (직 무)

1.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고 자금 집행 및 행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2. 부 회 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불참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.
4. 총 무 :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락업무 및 회비 등 자금관리를 수행한다.

### 제 4 장 회 의

#### 제 12 조 (회 의)

본 회의 회의는 오찬모임과 만찬모임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며, 총동문회 행사일정과 중복시 회장의 권한으로 총동문회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오찬모임 : 3,6,9,12월을 제외한 매월 두번째 수요일 12시로 한다.

2. 만찬모임 : 3,6,9,12월 두번째 수요일 저녁 7시로 한다.
3. 정기총회 : 매년 1회 개최하며, 3월 정기모임(만찬모임)으로 한다.
4. 총회의 의결사항
  - (1)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 - (2)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- (3)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  - (4)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- (5) 총회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.

## 제 5 장 운영 및 회계

### 제 13 조 (운영자금)

본 회의 운영자금은 일정액의 월회비, 찬조금 등으로 규정한다.

### 제 14 조 (월회비)

회원은 참석시 월회비 2만원을 납부한다.

### 제 15 조 (찬조금)

본 회의는 찬조금으로 재정을 추가할 수 있다.

### 제 16 조 (예치 및 관리)

본 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총무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본 회의 자금에 귀속된다.

### 제 17 조 (회계기간)

본 회의 회계기간은 당해 정기총회부터 익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
### 제 18 조 (회계보고)

총무는 매년 정기총회시 당해연도의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 19 조 (지출결정)

본 회의에 관한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뒤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 20 조 (자료보관)

총무는 지출에 관한 모든 내역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